

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<신설 2024. 12. 31.>

유통수산종자의 표시 기준·방법(제32조제2항 관련)

1. 표시 기준

가. 공통사항: 수산종자별로 구분된 용기·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같은 수산종자더라도 생산출처, 입식일 또는 채묘일이 다를 경우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.

나. 표시사항별 표시 기준

1) 수산종자의 명칭: 수산종자의 명칭(수산식물종자의 경우는 품종의 명칭)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명칭을 일반명에 병기할 수 있다. [예시: 넙치 또는 광어(넙치)]

2) 수산종자의 포장당 무게, 개수 또는 씨줄길이

가) 포장당 무게 또는 개수: 용기·포장별 무게 또는 수산종자 마릿수(개수)를 표시한다. [예시: 1kg 또는 1만 마리]

나) 씨줄길이: 씨줄의 개수(단위: 틀) 및 씨줄별 길이를 표시한다. [예시: 10틀 (100m/틀)]

3) 수산종자의 생산이력

가) 전단계 생산출처: 수산종자생산업자 또는 수산종자를 생산한 업체명을 표시한다.

나) 입식일: 수산종자생산시설에 새로운 수산종자를 들인 날짜를 연월일로 표시한다.

다) 채묘일: 유생(幼生) 또는 포자를 패각·그물발·어미줄 등에 부착하는 등 수산종자를 붙인 날짜를 연월일로 표시한다.

라) 수산종자의 생산지: 시·군·자치구명으로 표시한다.

마) 수산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: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중 하나만 표시하거나 함께 표시한다. [예시: 생산(2025) 또는 포장(2025. 1.)]

4)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: 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표시한다.

5)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: 수산종자생산업자만 표시한다.

6)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: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는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표시하고[예시: AQ-2025-1], 품종보호 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표시한다. [예시: AQ-제1호]

7)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·수입 판매 신고번호: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·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표시한다.

- 8)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: 유전자변형 품종의 경우만 표시한다.
- 9) 그 밖의 사항: 1)부터 8)까지의 사항 외에 질병검사, 이산화탄소 배출량·감축량 등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. [예시: 흰반점병(음성) 또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(불검출)]

2. 표시 방법

가. 공통사항

- 1)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.
- 2)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아야 한다.
- 3) 글씨의 색상은 바탕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.
- 4) 지워지지 않는 잉크·각인 또는 소인(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) 등을 사용하는 등 표시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.
- 5)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, 글자 비율(장평)은 9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, 글자 간격(자간)은 -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표시면의 크기가 작아 글씨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포인트 보다 작게 하되,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.

나. 용기·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- 1) 용기·포장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산종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인쇄한다.
- 2) 1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기·포장에 직접 인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격에 맞는 라벨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되, 그 라벨 등을 용기·포장에 묶거나 부착해야 한다.

가) 라벨: 가로 8센티미터 × 세로 3센티미터 이상

나) 스티커 또는 꼬리표: 가로 5센티미터 × 세로 8센티미터 이상

다. 용기·포장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: 다음의 규격에 맞는 폼탈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되, 그 폼탈 등을 수산종자에 꽃거나 거치하는 등 유통환경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정해야 한다.

- 1) 폼탈: 표시면은 가로 12센티미터 × 세로 6센티미터 이상, 꽃이부분은 10센티미터 이상
- 2) 표시판: 가로 12센티미터 × 세로 6센티미터 이상. 다만, 선박이나 차량에 부착하는 표시판의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×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.
- 3) 라벨: 가로 8센티미터 × 세로 3센티미터 이상
- 4) 꼬리표: 가로 5센티미터 × 세로 8센티미터 이상